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요구서

【지적사항 목록】

연번	제목	처분요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	근무시간내 사적 게시글 게시	주의	-	주의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불 입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근무시간내 사적 게시글 게시----- 1

[일련번호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근무시간내 사적 게시글 게시
[부 서 명] ○○·○○○○○○○
[행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주의
[지 적 내 용]

1. 업무 개요

(재)대전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에 전념해야 할 성실의 의무를 「인사관리 규정」 및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2. 관련 법령(판단 기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11장 복무내에 제54조 제1항에 “근무시간”을, 제55조에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제55조2에 “유연근무제”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84조 제1항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제97조에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이하 ‘경고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처분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표 1] 인사관리규정 제11장(복무)

제 54조(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중식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임금피크제 1년차 직원은 급여 감액분 만큼인 주당 4시간씩 근로시간에서 단축하여 퇴직 후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신설 2022.5.1.>
제 55조(탄력적 근무시간제) 각 개인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인사관리규칙에 정한다.
제 55조2(유연근무제) 각 개인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인사관리규칙에 정한다.

[표 2] 인사관리규정 제84조(징계)

- 제84조(징계) ①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 1. 관계법령 및 법인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2. 고의 또는 과실로써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4.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5.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20.4.1.>
 - 6.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20.4.1.>

[표 3] 인사관리규정 제97조(성실의 의무)

제97조(성실의 의무) 임·직원은 재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표 4]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5조(처분사유)

- 제5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제반 복무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 3.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 4.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당해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한 때
다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를 기각한 때 <개정 2013.2.1>
 -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 6. 부서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 7. 기타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26년 ○월 ○○일 국민신문고로 ‘대전테크노파크 직원의 외부 민원 제기 및 온라인 비방행위로 인한 업무태만 의혹 조사 요청서’가 첫 번째로 접수 되었고 그내용을 보면 ‘대전테크노파크의 임직원인 피민원인 ○○○는 특정 사적 커뮤니티 및 인물을 대상으로 한 비방글을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SNS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나아가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상습·다발성 민원을 제기하여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는 개인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양의 민원과 고소, 고발을 수년에 걸쳐 지속하고 있는 형태 자체로 볼 때, 본연의 공적 직무를 소홀히 하는 업무태만이 강력하게 의심되므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요청’ 한다는 사항이다.

[표 5] 국민신문고 민원 1 발체

민원정보			
신청번호		접수번호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Web	기관메뉴/접수경로	
진행상황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민원답변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신청일시	2026-	접수일시	2026-
민원제목	대전테크노파크 직원의 외부 민원 제기 및 온라인 비방 행위로 인한 업무태만 의혹 조사 요청서		
<첨부파일> 비방게시글.png 비방1.png 비방2.png 비방3.png 비방4.png	1. 대상자 인적사항 2. 민원 취지 대전테크노파크의 특정 사적 커뮤니티 및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비방글을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SNS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상습·다발성 민원을 제기하여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양의 민원과 고소, 고발을 수년에 걸쳐 지속하고 있는 형태 자체로 볼 때, 본연의 공적 직무를 소홀히 하는 업무태만이 강력하게 의심되므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국민신문고로 ‘대전테크노파크 임직원의 근무태만, 품위손상, 집단행위 주도에 대한 징계요구’가 두 번째로 접수 되었고, 그 내용은 첫 번째와 비슷하였으며 민원취지를 보면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인 대전테크

노파크에 종사하는 임직원 ○○○는 사적 감정과 이익을 위해 특정 단체 및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상습 게재하였으며, 수백명에 달하는 대회 참가자들의 선수출신 여부를 한명 한명 직접 검색하는 등 수영과 관련된 온/오프라인의 활동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여짐. 온/오프라인상의 여론몰이를 주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직무태만 행위, 임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활동 이외의 집단적 행위 등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전테크노파크의 철저한 감사를 통한 엄중한 징계처분을 요구’ 한다는 사항임

[표 6] 국민신문고 민원 2 발체

민원정보			
신청번호		접수번호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Web	기관메뉴/접수경로	
민원발생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행상황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신청일시	2026-07-20 14:52:27	접수일시	2026-07-20 14:52:27
민원제목	대전테크노파크 임직원의 근무태만, 품위손상, 집단행위 주도에 대한 징계 요구		
<첨부파일> 각종 온라인 증거자료.zip	1. 제목 : 대전테크노파크 임직원의 근무태만, 품위손상, 집단행위 주도에 대한 징계 요구 3. 민원 취지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에 종사하는 ○○○ 사적 감정과 이익을 위해 특정단체 및 특정인물을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상습 게재하였으며, 수백명에 달하는 대회 참가자들의 선수출신여부를 한 명 한 명 직접 검색하는 등 수영과 관련된 온/오프라인의 활동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보여집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여론몰이를 주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직무태만 행위, 임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활동 이외의 집단적 행위 등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테크노파크의 철저한 감사를 통한 엄중한 징계처분을 요구합니다.		

이에 감사실에서 신고 민원인이 요구된 근거와 당사자인 ○○○의 경위서를 근거로 자료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표 7]으로 작성해 보았으며, 인사규정에서 정의한 제54조 근무시간 및 제97조 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에 동호회 사이트(카페)에 올린 건은 4건이 있었음을 확인되었고 아울러 근무시간 내 해당글에 대한 댓글도 올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표 7] 동호회 사이트 게재

게시날짜	시간	요일	SNS	닉네임	작성제목	비고
2022.11.06 (신규)	09:21	일	○○	○○○○	(작성글)대회 주최측의 수정공고 없는 날치기 밀 실요강변경(청주대회) (댓글)댓글4건 중 11/6(일) 2건, 11/7(월) 1건, 미확인 1건	증A)
2023.11.12 (중복)	12:44	일	○○	○○○○	(작성글)허술한 대한수영연맹 (댓글)댓글6건 중 11/12(일) 6건	증B)
2024.05.23 (중복)	17:29	목	○○	○○○○○	(작성글)대전수영연맹 경기 운영위원회(2024년 시장기) (댓글)댓글2건 중 05/23(목) 1건, 미확인 1건	증C)
2024.05.30 (중복)	14:04	목	○○	○○○○○	(작성글)2024SUS 대전광역시 마스터즈 수영대회 (댓글)댓글7건 중 05/30(목) 1건	증D)
2024.05.30 (중복)	14:12	목	○○	○○○○○	(작성글)경기 운영위원회 결정에 감사(2024년 시장기) (댓글)댓글1건 중 05/30(목) 3건, 6/30(월) 1건, 6/4(화) 2건(근무시간외2건), 6/5(수) 1건	증D)
2024.06.07 (중복)	13:09	금	○○	○○○○○	(작성글)스포츠클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대전시 장기 수영대회) (댓글)없음	증E)
2024.06.16 (중복)	20:32	일	○○	○○○○○	(작성글)대회 개최취지 몰각과 경기지도..(대전시 장기 수영대회) (댓글)댓글1건 중 미확인 1건	증F)
2025.05.12 (중복)	07:59	월	○○	○○○○○	(작성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됩니다(대전 시장기 수영대회) (댓글)댓글6건 중 5/13(화) 1건, 5/19(월) 1건, 5/20(화) 1건, 5/22(목) 1건, 6/3(수) 1건(휴일1 건), 미확인 1건	증G)
2026.05.20 (신규)	08:11	수	○○	○○○○○	(작성글)엘리트 선수 출신의 생활체육 수영 대회 부정 출전(스포츠클럽센터 징계요구 결정 등) (댓글)댓글8건 중 5/20(수) 7건(근무시간외2건), 5/21(목) 1건(근무시간외1건)	증H)

자료 : 국민신문고 신고민원인 제출자료 재구성

[확인자 의견]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조치할 사항]

- ① 앞으로는 직원이 근무시간내에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게시글을 작성
하거나 게시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정책기획본부 인사혁신팀에서는 행위자 ○○·○○○○○○○ 일반직 ○급 ○○○
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